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 남 시 【환경보호과】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정이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5년 11월 6일 ~ 11월 25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나. 규제관련 : 의견없음
- 9. 기타 참고사항
- 환경부 「저공해조치 명령에 관한 표준조례안」
-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후대기과 교통환경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유사용자동차" 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하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 니한 자동차
-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의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 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 1.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환경보호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보호과장 박건석
	역기·8명 팀 장	대기관리팀장
	직위·성명	신상우
	담당자	신상우
	성명·전화번호	(790-5083)

《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삭제 <2009.2.6.>
-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7)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⑨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 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 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3. 제26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 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 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유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 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18)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정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저공해조치 명령에 관한 표준조례(안)

- ◆ 본 표준조례(안)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 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 본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명령 등은 해당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음

2015. 7.

환 경 부 교통환경과

○○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 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 니한 자동차
-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 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

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 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